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9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7.

발 의 자 : 김태년 • 이훈기 • 황명선

손명수 · 박용갑 · 전현희

정준호 · 임호선 · 김영진

김영배 · 김한규 · 이학영

전진숙 • 이기헌 • 박해철

김병기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,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.

한편 최근 배송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쿠팡 카플렉스(쿠팡 본사와 계약을 맺고 배송을 수행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계약 형태로 서 본인이 원하는 날짜 및 시간대에 원하는 소량의 물량 배송을 신청 하고 본인의 자가용 차량으로 배송하는 사람)인 여성의 경우 대통령령 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택배기사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 용 대상이 되지 않음. 그러나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 등 그날그날 일감을 수행하는 배달라이더들도 특수고용직인 퀵서비스 기사로서 산재·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카플렉스만 산재·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노무제공자 정의에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한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1조의15제1호).

법률 제 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의15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,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"을 "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91조의15(노무제공자 등의 정 제91조의15(노무제공자 등의 정 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) -----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노무제공자"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 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 가를 지급받는 사람-----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 성,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 다. 가. · 나. (생략) 가. • 나. (현행과 같음) 2. ~ 6. (현행과 같음) 2. ~ 6. (생략)